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. 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구민들에게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자 현재의 이용료 징수방법을 연회비제로 전환하고, 장난감대여점의 운영중에 나타난 법규적 미비된 사항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회원등록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6조 제2항)  
지역 제한 없이 회원 등록한 자에 한하였던 회원자격을 서울특별시로 제한하여 대여점 이용자격을 명확하게 규정
- 연회비제로 대여점 이용자 이용률 제고(안 제9조 제1항)  
이용료 징수제에서 연회비제로 변경하여 대여점 이용률 제고
- 감면대상 이용자 확대 실시(안 제9조 제2항, 제4항)  
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, 셋째아 가정과 자원봉사자에 감면이용 대상 확대
- 대여 수량 및 기간을 명확히 규정(안 제9조 제5항, 제6항 신설)  
1인당 대여수량 및 기간을 정하여 반납지연 회원에게 일정한 연체료를 부과하여 운영 관리 철저

### **3. 개정근거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

### **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**

### **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**

### **6. 기타사항**

- 가. 입법예고(2008.12. 4. ~ 2008.12.24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 · 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09. 1. 6)
  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“대여점” 이라 함은”을 ““대여점” 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수탁자”라 함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“수탁자”란 제5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회원가입 대상은 서울특별시 거주 또는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인에 한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이용료 징수)”를 “(연회비 징수)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”를 “별표 1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”를 “연회비의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”로,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

제9조 중 제3항을 삭제하고,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회비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.

1.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(마포구 자원봉사 등록회원에 한함)
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⑤ 대여수량은 회원 1인당 2점 이내이며, 마포구에서 인가받은 보육시설 중 등록회원(시설장)은 보육목적상 10점까지 대여 받을 수 있다.

⑥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, 반납 지연시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6조 및 제9조 개정 조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여하는 회원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### 마포장난감대여점 연회비(제9조제1항 관련)

구 분	금 액	비 고
연회비	1년 10,000원	

[별표 2]

### 마포장난감대여점 연체료(제9조제6항 관련)

구 분	금 액	비 고
연체료	1일 1점당 200원	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3조(정의) (생략)</b></p> <p>1. “<u>대여점</u>”이라 함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“<u>수탁자</u>”라 함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.</p>	<p><b>제3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1. “<u>대여점</u>”이란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“<u>수탁자</u>”란 <u>제5조제2항에 따라</u> -----</p> <p>-----</p>
<p><b>제6조(회원가입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회원은 대여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.</p>	<p><b>제6조(회원가입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회원가입 대상은 서울특별시 거주 또는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인에 한한다.</p>
<p><b>제9조(이용료 징수) ①</b>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>4. (생략)</p> <p>③ 이용료는 1,000원~5,000원 이내로 하되 매입 장난감 구입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품목별 이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</p>	<p><b>제9조(연회비 징수) ①</b> -----</p> <p>----- <u>별표 1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연회비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삭 제&gt;</p>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회비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 (마포구 자원봉사 등록회원에 한함)</u></p> <p><u>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u></p>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⑤ 대여수량은 회원 1인당 2점 이내이며, 마포구에서 인가받은 보육시설 중 등록회원(시설장)은 보육목적상 10점까지 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⑥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, 반납 지연시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.</u></p>
<p><b>제13조(자원봉사자) ①~② (생략)</b></p> <p><b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</b></p>	<p><b>제13조(자원봉사자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<b>③ 제1항에 따른 -----</b> ----- -----.</p>
<p><b>제15조(지도·감독 등)① (생략)</b></p> <p><b>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탁의 해지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b></p>	<p><b>제15조(지도·감독 등)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<b>② ----- 제1항에 따라-----</b> ----- -----. -----.</p>